

#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684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 고성군수  
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2.  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10. 18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「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」에 대하여(2022. 9. 26. 의안번호 제2503호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 제4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이 20% 이상 증액되어 의회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3. 위탁 근거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  
나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  
다.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### 4. 위탁 내용

#### 가. 시설현황

시설명	위치	면적	종사자	정원	시설현황	비고
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	고성읍 동외로 156번길 36, 3층	97m <sup>2</sup>	2명	20명	놀이·학습공간, 사무공간, 상담실 등	

나. 위탁기간: 2023. 1. ~ 2027. 12. (5년)

다. 위탁방법 및 추진사항

- 1)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(공개모집): 2022. 12. 19.
- 2) 위탁자: 사단법인 백향가정상담센터(대표자 박덕해)
- 3) 위탁계약 체결: 2022. 12. 22.
- 4) 위탁운영: 2023. 1. 1. ~ 현재(센터장 백정여)

라. 위탁내용: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관리·운영 전반

마. 예산 변경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 (2022년)	변경 (2024년)	증감액	비고
합계	86,092	104,472	18,380	21% 증가
인건비	59,692	73,272	13,580	국비50% 도비25% 군비25%
운영비	3,600	12,000	8,400	국비50% 도비25% 군비25%
자재운영비	22,800	19,200	△3,600	군비100%

1) 민간위탁 동의 시 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 편성 요구액 **20%이상 증액**

2) 증액 사유: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가내시 통보 기준(국 50, 도 25, 군25)

가) 인건비: 증 13,580천 원

- 당초(2022년): 4,974천 원 × 12월 = 59,692천 원(센터장외 1명)

- 변경(2024년): 6,106천 원 × 12월 = 73,272천 원(센터장외 1명)

나) 운영비: 증 8,400천 원

- 당초(2022년): 월 300천 원 × 12월 = 3,600천 원

- 변경(2024년): 월 1,000천 원 × 12월 = 12,000천 원

## 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동의안은 제2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한 다함께돌봄 1호점 관리·운영 전반 사무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내용 변경에 대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으려는 것임.
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개정 시행(시행일 2022.12.27.)으로 동의안 제출 시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산출하여 제출하고 의회 동의 후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**<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>**

**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③**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4. 민간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7.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개정 2022.12.27.>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**④**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(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,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,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)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- 중요내용 변경사항: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
  - (당초 동의안)
    - 소요예산(2022년): 86,092천 원
  - (금회 변경 동의안)
    - 소요예산(2024년): 104,472천 원
    - 증액사유: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가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
- 당초 동의안 제출 시 종전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소요 예산만을 제출하였으나 2024년도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 시 중요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20% 이상 변경에 해당되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, 다함께돌봄센터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